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98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이주영 · 이준석 · 김예지  
천하람 · 김대식 · 최수진  
윤재옥 · 박준태 · 조지연  
박충권 · 한지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과 이송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으로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 고려하여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교육 및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25조).
- 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하고, 통합 이송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 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송”이란 응급환자를 발생 현장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최적의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환자 평가 및 모니터링, 응급처치, 이송병원 선정, 환자 인계 등을 포함한다.

제1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제9호”를 “제25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3. 제31조의5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11.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 조정·관리에 관한 업무

## 12. 전문응급진료체계 질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및 운

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권역 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을 위한 상황 관리 및 협력 체계 구축
2. 관할 권역 내 응급환자의 중증도 평가 결과에 따른 이송 조정 및 중증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3. 119구급대 또는 관할 응급의료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권역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및 이송병원 선정
4. 응급헬기 등 운용에 관한 권역 단위 협력·조정
5.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관할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정보 및 수용 능력의 실시간 관리 및 공유
6. 관할 권역 응급의료기관 및 119구급대 간 환자 연계 및 정보 공유 지원

7. 관할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 평가 · 품질 향상 활동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단위의 이송 및 전원 관련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업무수행 절차,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등의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를 제31조의6으로 하고,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심화교육

③ 응급의료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모든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예외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기본교육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 소방청 및 교육과정 · 시설 · 전

문인력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

2. 심화교육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교육과정·시설·전문인력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이수 면제 대상 자격,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의 수료·평가, 그 밖에 교육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의2 중 “제31조의5제2항”을 “제31조의6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제6호·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략)

④ ~ ⑦ (생략)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 ~ 9. (생략)

<신설>

<신설>

-----  
-----.

-----제25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

-----  
-----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의5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4. ~ 10.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1.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 조정·관리에 관한 업무

12. 전문응급진료체계 질 향상

10. · 11.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13. · 14.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

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 단

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

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권역 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을 위한 상황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2. 관할 권역 내 응급환자의 중

증도 평가 결과에 따른 이송

조정 및 중증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3. 119구급대 또는 관할 응급의  
료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권역 응급의료기관의 수  
용능력 확인 및 이송병원 선  
정

4. 응급헬기 등 운용에 관한 권  
역 단위 협력·조정

5.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  
한 관할 권역 내 응급의료기  
관의 병상 정보 및 수용 능력  
의 실시간 관리 및 공유

6. 관할 권역 응급의료기관 및  
119구급대 간 환자 인계 및  
정보 공유 지원

7. 관할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 운영에 관한 모  
니터링·평가·품질 향상 활  
동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단위의 이송 및  
전원 관련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  
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업무수행 절차,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등의 조정에 관

<신 설>

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심화교육

③ 응급의료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모든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예외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에서 실시한다.

1. 기본교육기관: 중앙응급의료 센터·소방청 및 교육과정·시설·전문인력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

2. 심화교육기관: 중앙응급의료 센터 및 교육과정·시설·전문인력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이수 면제 대상 자격,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의 수료·평가, 그 밖에 교육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①  
~ ⑤ (생략)

제48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①  
(생략)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의2.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 7. (생략)

②·③ (생략)

제31조의6(응급실 출입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제2

조제8호-----

-----

-----.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1조의6제2항 -----

-----

-----

-----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